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2월 일
발 의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성주1·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 설치 및 복지서비스 향상,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가치관 확립 등 복지수요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부서 간 일부 업무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 : 547명 → 559명(+12)

○ 집행기관의 정원 : 535명 → 547명(+12)
- 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인력증원 10명
-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에 따른 인력증원 2명

○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(변동없음)

나.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

○ 본청 : 254명 → 266명(+12)

○ 의회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(변동없음)

다. 직종·직급별 정원 조정

○ 일반직 : 443명 → 455명(+12)

■ 5급 : 26명 → 27명(+1)
- 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 정원책정 : 행정+시설(+1)

■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: 413명 → 424명(+11)

라.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(변동없음)

마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○ 일반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현 행	5% 이내	17% 이내	22% 이내	56% 이상
조 정	+1.5%	+2%	+8.5%	△12%
개 정	6.5% 이내	19% 이내	30.5% 이내	44% 이상

○ 연구직・지도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별정직 공무원(변동없음)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(직급별 정원) 및 같은 규정 제30조(정원의 규정)

나. 인력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721,260천원

○ 일반직 : 60,582천원 × 10명 = 605,820천원

○ 복지직 : 30,000천원 × 2명 = 60,000천원
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3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

○ 기능직

・기능9급→기능8급 : (2,360-1,908)×12월×5명 = 27,120천원

・기능9급→기능7급 : (2,844-1,908)×12월×1명 = 11,232천원

・기능9급→기능6급 : (3,332-1,908)×12월×1명 = 17,088천원
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3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개정조례안 : 별첨

3) 입법예고(2013. 2. 16 ~ 2013. 2. 20) : 의견 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47명”을 “55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35명”을 “547명”으로 한다.
별표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비율	6.5% 이내	19% 이내	30.5% 이내	44% 이상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(1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7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35명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---------- 559명--------. 1. ---------- 547명 2.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(2)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〔별표2〕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2. 기능직 공무원
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6급</td><td>7급</td><td>8급</td><td>9급</td></tr><tr><td>비율</td><td>5% 이내</td><td>17% 이내</td><td>22% 이내</td><td>56% 이상</td></tr></table></td><td>〔별표2〕
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2. 기능직 공무원
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6급</td><td>7급</td><td>8급</td><td>9급</td></tr><tr><td>비율</td><td>6.5% 이내</td><td>19% 이내</td><td>30.5% 이내</td><td>44% 이상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〔별표3〕
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
2. 기능직 공무원
<table><tr><td>기관별
직급별</td><td>총계</td><td>본청</td><td>의회사무과</td><td>직속기관</td><td>사업소</td><td>읍면</td></tr><tr><td>총계</td><td>547</td><td>254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⋮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계</td><td>443</td><td>218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⋮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26</td><td>11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6급 상당 이하 계</td><td>413</td><td>204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⋮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td>〔별표3〕
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
2. 기능직 공무원
<table><tr><td>기관별
직급별</td><td>총계</td><td>본청</td><td>의회사무과</td><td>직속기관</td><td>사업소</td><td>읍면</td></tr><tr><td>총계</td><td>559</td><td>266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⋮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일반직계</td><td>455</td><td>230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⋮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5급</td><td>27</td><td>12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6급 상당 이하 계</td><td>424</td><td>215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⋮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[별표 3]

성주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(제4조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 면
총계	559	266	12	96	31	154
정무직 계	1	1				
군수	1	1				
일반직계	455	230	7	59	19	140
4급	1	1				
4~5급	3	2		1		
5급	27	12	3		2	10
6급 상당 이하 계	424	215	4	58	17	130
별정직 계	7	2	1	1	3	
6급상당 이하 계	7	2	1	1	3	
연구사 계	3	3				
학예연구사	1	1				
임업연구사	1	1				
기록연구사	1	1				
지도직 계	28			28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5			25		
기능직 계	65	30	4	8	9	14